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84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김선민·김재원·차규근

조 국・김준형・이해민

강경숙 · 신장식 · 박은정

정성호・김 윤・정춘생

서왕진 • 서영석 • 허성무

한창민 · 이수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특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 따르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 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음.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을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아니한다.
- 제18조(일본군위안부 피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 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의미한다)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 <신 설></u>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
	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
	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
	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	<u>2.</u>
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	
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u>피해자를</u> 말한다.	.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u><신 설></u>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
	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
	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u>아니된다.</u>
<u><신 설></u>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

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 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 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 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일본군위안부 피해 상징

 물에 대한 모욕 금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

<신 설>

으로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 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조 형물 또는 상징물을 의미한다) 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